

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정수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

□ 제안이유

-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중 쓰레기 봉투의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해 판매소의 범위를 확대하고, 이에 따른 각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도모와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동안 수거를 지연하는등의 유예기간 조항은 삭제하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(안제5조)
-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특정하게 지정하던 것을 읍면동사무소 및 일반 상가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(안제8조)
- 봉투판매인의 시설기준, 영업상 의무조항을 규제정비차원에서 삭제(안제19조)

□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쓰레기를 배출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폐기물을 종전에는 일정기간(2~3일)수거를 지연한 다음 수거하던 것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즉시 수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며

- 쓰레기 봉투 판매에 대한 사항에 대해 판매소의 범위를 확대하고, 이에 따른 각종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도모와 쓰레기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업무의 효율성제고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